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2006. 3. 24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제정 2005. 12. 23. 공포]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함에 있어 긴급지원연장의 결정, 적정성 심사 및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 하고자 내용에 맞게 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안 제2조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나.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협의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응한다"를 "응하고"로 하며, 후단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중 "(사무소장)"을 삭제 한다.
제3조제3항중 "호선하되"를 "군수가 되고"로 하고, "위원 각 1인"을 "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후단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제3조제5항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을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시행규칙」" 으로 하고, "협의체" 를 "대표협의체" 로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담당 및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은" 을 "실무협의체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을" 로 한다.
제4조중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로 한다.

제7조중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하고,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동조 후단에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를 신설한다.

제8조제2항중 "위원장" 을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군수 또는" 을 삭제한다.
제9조제4항중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심의사항" 을 "심의 및 의결사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심의결과" 를 "심의 및 의결결과" 로 한다.

제13조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대표협의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성주군 ---------- ---------- ----------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명칭의 명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
1.~5.(생략)	1.~5.(현행과 같음)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①(생략)	제3조(구성)①(현행과 같음)	위원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의 명확화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과장(사무소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 ----------〈삭제〉---------- ---------- ----------.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군수가 되고 ---------- ----------위원 중 1인------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호선과 당연직위원의 정비
⑤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담당 및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시행규칙」----------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관련 업무담당과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을---------- ----------.	
⑥~⑦(생략)	⑥~⑦(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위원명단 공개에 있어 위원 임명의 명확화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등의 직무에 대한 협의체 조문 정비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위원 해촉의 권한에 대한 조문 정비
제8조(간사 및 직원)①생략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간사 및 직원)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간사의 역할에 대한조문 정비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9조(회의 등) ①---------- 〈삭제〉 ---------- ②~③(현행과 같음)	제3조제3항의 개정에 의한 삭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 ---------- ---------- ---------- ---------- ----.	제3조제3항의 개정에 의한 조문 삭제
제10조(회의록) ①(생략)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회의록)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현행과 같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조문 정비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 ---------- ----------	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조문 정비